

구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연월일 : 2020.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 받은 학자금 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함.

2. 주요내용

가.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3조)

- 학자금 이자 지원의 대상 및 범위
- 학자금 이자 지원의 시기 및 방법 등

나. 지원 자격 및 범위 (안 제4조)

- 지원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직계 존속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
- 휴학생에 대한 이자지원 기간은 군 복무기간을 제외한 최대 6학기 까지 지원

다. 중복지원 금지(안 제6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기업체 등 타 기관에서 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조 례 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 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대출 이자(이하 “이자”라 한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이자 지원의 대상 및 범위
2. 이자 지원의 시기 및 방법
3. 그 밖에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4조(지원 자격 및 범위) ① 시장은 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중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지원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자 지원대상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이자 지원기간은 최대 6학기로 하되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하되, 이자 지원의 지원대상과 규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기업체 등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학자금 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 중단) 이 조례에 따라 이자 지원을 받던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1. 타 지역으로 전출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지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학업장려금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한 경우, 해당 사업에 따라 학업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3.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거치(据置) 기간 동안은 이자를 내게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한 후에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3의2. "전환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이하 "기대출"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4. "신용보증"이란 대학생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4의2. "구상채권"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으로 발생한 보증채무를 금융회사등에 이행하여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 주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라.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7. "금융회사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구미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중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지원 공고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정 수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안 제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2020. 5월 현재 구미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잔액 현황을 기초하여 산출한 결과 소요예산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산출내역 : 대출 잔액×이자지원신청비율(10%)×대출금리(%)>
 - 취업 후 상환 : $4,492,000,000\text{원} \times 10\% \times 1.85\% = 8,310,200\text{원}$
 - 일반 상환 : $1,883,000,000\text{원} \times 10\% \times 2.6\% = 4,895,800\text{원}$합계 13,206,000원

※ 여러 변동 상황(대출상환 완료 및 주소지 변동 등)을 고려하여 이자 지원신청비율을 대출 잔액의 10% 정도로 추계함.

4. 작성자

- 교육지원과 지방행정주사 김중연(480-2701)
- 교육지원과 지방행정서기 이훈주(480-2704)

소 관 부 서		교육지원과
입 안 자	과 장	윤 태 호
	담 당	김 종 연
	담 당 자	이 혼 주 (480-2704)